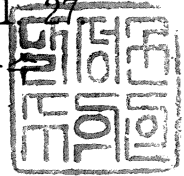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1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. 27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교육통지서 송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교육불참자 통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0. 12. 30. ~ 2021. 1. 19.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”이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노래연습장업”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.

제3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의 위탁)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계획의 수립) ①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
2. 교육일시 및 장소
3. 교육내용 및 방법
4.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
5.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
6.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교육통지서 송부)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이수자 관리)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·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불참자 통지)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 결과 보고)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6조(권한의 위탁) ① 생략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